가 .

인삼종자의 용도는 일부가 화장품 제조의 원료로 쓰이고 주로 재배농가 파종용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수출과 연결되고 있다. 2013년 약 9.7톤의 종자가 베트남 중국 등으로 수출되었으나 2014년의 통계는 단지 12.2kg이 일본과 중국으로 출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중국의 인삼종자 생산 허가 절차

가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 제20항을 따르며, 허가조건은 (1) 종자번식을 위한 격리와 재배육종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2) 검역성병해충이 없는 종자생산지여야 한다. (3) 종자생산에 적합한 자금과 생산, 검역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4) 전문적인 종자생산과 검역기술인원을 구비해야 한다. (5) 법률, 법규규정의 기타조건

1) 허가절차

가). **접수**

- (1) 해당책임자: 현정무공개중심 농업국창구인원
- (2) 해당직책과 권한: 허가의 법적인 조건과 표준에 의거하여 신청자료가 완벽히 구비되었는지, 법적인 형식에 부합한지, 신청사항이 본 행정기관의 직책범위내에 있는지, 허가신청이 법률법 규의 규정기간내에 제출되었는지,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한 뒤, 접수할지를 결정 한다. 동시에 "행정허가법"제32항규정에 의거해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
- ① 신청사항이 농업국의 권한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면, 바로 접수를 거절하고, 신청인한테 이를 알린다.
- ② 신청자료에 접수현장에서 고칠 수 있는 오류가 있으면, 신청인이 현장에서 고칠 수 있게 한다.
- ③ 신청자료가 부족하거나 접수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접수현장에서 혹은 1일이내에 신청인에 게 알려주고 자료를 보충하고 고치게 해야 한다.
- ④ 심사자료구비, 요구에 부합, 혹은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신청보충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자료와 모든 보충자료를 접수받은 날을 기준일로 처리된다.
- ⑤ 통지서를 작성하고 접수처에 전달하고 신청자료를 농업국종자관리소에 전달한다.
- (3) 기한: 즉시

나) 심사

(1) 초싞

- 1) 해당책임자: 종자관리소초심원
- 2) 해당책임 및 권한:
- ① 허가조건과 표준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내용에 대해 합법성, 진실성 심사를 진행한다.
- ② 현장검증
- ③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충분한의견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창구직원을 철수시킨다: 조건에 부합되고, 종자관리소책임자가 허가를 건의한 초심의견에 싸인을 하면 초심원이 다시 해당관리국분담관리자에게 재심을 신청한다.
- 3)기한: 5일 근무일

(2) 재심

1) 해당책임자: 농업국종자관리간부